

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28 호 |
| 의결 연월일 | 2021. 4. 1. (제 4 회) |

| |
|----------------|
| 심의 의결 사항 |
|----------------|

**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
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자 | 미래경제국장 |
| 제출연월일 | 2021. 4. 1. |

기획예산과장 심사필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1-28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1년 4월 1일

제출자: 미래경제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정비
-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변경
(안 제2조의 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1. 02. 24. ~ 03. 16.): 의견 없음
- 2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”으로,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은 다음 각호”를 “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”로 한다.

제2조의2 본문 중 “2021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졸업후”를 “졸업 후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2인이내”를 “2명 이내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졸업 후”를 “졸업 후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3년이내”를 “3년 이내”로 한다.

제10조제3호 본문 중 “2년이내”를 “2년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</u>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<u>필요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<u>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</u>----- ----- <u>필요</u>----- -----.</p> |
| <p>제2조(기금구성) ①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(이하 “학자금”이라 한다) 대여를 위한 <u>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</u> 조성한다.</p> | <p>제2조(기금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</u>은 <u>다음 각 호</u>----- --.</p> |
| <p>1. 2. (생략) ② (생략)</p> | <p>1.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1년 6월 30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| 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 ----- <u>2026년 6월 30일</u>----- -----.</p> |

제6조(대여제한대상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.

1. 2. (생 략)
3.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
4. 5. (생 략)

제7조(대여횟수 제한)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1. ~ 4. (생 략)

제8조(대여금액 및 대여한도) ① (생 략)

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9조(이자 및 상환) ① (생 략)

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.

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. 다만, 3년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

제6조(대여제한대상) -- 각 호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졸업 후 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대여횟수 제한) -----

----- 각 호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대여금액 및 대여한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1명-----
----- 2명 이내-----
-----.

제9조(이자 및 상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범위-----.

③ ----- 졸업 후 -----

---. --- 3년 이내-----

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0조(대여취소 및 일시상환) 구 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. 다만,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

4. (생략)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대여취소 및 일시상환) 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2년이내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 :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과장 이기욱

(담당 : 행정7급 김옥경 / ☎ 2600-4065)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정비
-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변경
(안 제2조의2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평 가 번 호 | 2021 - 11 | | | | |
| 자 치 법 규 명 |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| | | | |
| 평가담당부서 | 감사담당관 | 직 급 | 행정7급 | 성 명 | 이경민 |
| 입안주무부서 | 자원순환과 | 통보(조치)일 | | 2021. 3. 17. | |
| 관 련 조 문 | | 검 토 결 과 | | 조 치 사 항 | |
| 개정안 전부 | | 원안 동의 | | - | |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| | | | |
|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2021A서울강서017 | | |
| 정책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| | |
| 소관부서 | 기관명 | 서울특별시 강서구 | |
| | 부서명 | 자원순환과 | |
| | 담당자명 | 김옥경 | 전화번호 02-2600-4065 |
|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| 2021년 3월 22일 | | |
|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자원순환과) |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. | | |
| 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 임관)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 | | |
| | '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'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| | |
|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| 해당 없음 | | |
|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 2021년 03월 22일 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</h3> (담당자/연락번호 : 최은영/02-2600-6762) 자원순환과장 귀하 | | | |

【지방자치법】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】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